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사이의 국경경비분야에서  
협 조 할 데 대 한 합 의 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이 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는 중조국경지역에서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고 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려는 념원으로부터 국경경비협조의 법적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국경경비사업에서 협조를 강화하여 중조국경(이 아래부터 《국경》으로 함)을 영원히 평화롭고 친선적이며 안정된 국경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 2 조

쌍방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협조한다.

- 1) 국경지역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사업
- 2) 국경과 국경연선시설물, 국경지역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는 조치를 협의하는 사업
- 3) 인원, 짐짐승, 운수수단, 비행기구들의 비법월경을 미리막고 제지시키기 위한 사업

4)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절도, 강탈 그리고 무기, 탄약, 마약 등 밀매와 밀수를 비롯한 각종 범죄를 방지하고 제지시키기 위한 사업

5) 단속한 월경인원, 집짐승, 운수수단을 찾아 제때에 넘겨주는것을 협조하는 사업

6) 국경경비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수단을 교류하는 사업

7) 이밖에 국경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사업

### 제 3 조

쌍방은 다음과 같은 형식과 방법으로 접촉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의 책임일군 또는 그들이 위임한 대리인은 2 년에 한번씩 상봉하여 국경협조의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하여 해결한다.

상봉은 두 나라 수도 혹은 합의한 기타 장소에서 순번제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연계는 두 나라 군대외사부문을 통하여 한다.

2) 중국인민해방군 심양군구와 조선인민군 국경경비총국의 지휘관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필요에 따라 상봉을 진행하여 국경경비사업과 쌍방국경지역대표부가 제출한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상봉은 두 나라 국경지역의 성(도)소재지 또는 쌍방이 합의한 장소에서 순번제로 한다.

구체적인 연계는 두 나라 군대외사부문 또는 국경지역대표부를 통하여 한다.

3) 쌍방은 국경지역에 국경지역대표부와 면담상봉장소, 상봉분소를 마주 설치하며 해당한 국경사무를 제때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쌍방국경지역대표부의 관할지역, 임무, 사업방식, 연계방법 등은 본 합의서의 부록으로 확정한다.

## 제 4 조

쌍방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때에 무상으로 교환한다.

1) 국경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과 국경연선시설물보호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

2) 인원, 짐짐승, 운수수단, 비행기구 등 월경하였거나 월경할것에 예견되는 문제

3) 월경하여 진행되는 강탈, 절도 그리고 무기, 탄약, 마약 등 밀매와 밀수를 비롯한 범죄활동의 징조를 발견하였거나 장악한 문제

4) 월경한 인원, 짐짐승, 운수수단을 수사협조하는 문제

5) 자연재해, 전염병, 가축병, 병해충 등이 발생되어 상대측지역에 넘어가서 전파될수 있는 문제

6) 국경지역에서 중대행동을 하는 목적, 시간, 장소문제

7) 두 나라가 발표한 국경문제에 관한 법과 법규

8) 기타 국경질서를 유지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문제

쌍방은 호상 넘겨받은 정보자료를 제공해준 측의 서면동의가 없이 공개하거나 제 3자에게 넘겨줄수 없다.

## 제 5 조

쌍방은 공동조치를 취하여 국경지역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한다.

1) 쌍방은 이미 합의한 내용에 따라 국경연선시설물에 대한 안전 경비사업을 강화한다.

2) 쌍방은 압록강, 두만강 공동수역에서 폭발물과 유독성물질로 물고기를 잡지 말며 두 나라 국경선 양측 각각 500m 범위안에서 총을 쏘면서 사냥을 하거나 총소리를 내는것을 금지한다.

3) 쌍방은 호상협동하여 인원의 비법월경 또는 국경을 통하여 위법 범죄활동에 종사하는것을 미리막거나 제지한다.

쌍방은 비법월경자를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말며 만일 월경자가 국경경비인원 또는 기타 공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위협을 주지 않았다면 그에게 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경경비인원은 부득이 월경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때 예고를 하고 경고사격을 먼저 해야 한다.

4) 쌍방은 국경연선에서 상대측지역 인민들의 생명재산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폭파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5) 쌍방은 국경지역에서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저해하는 발언과 행동이 나타나는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 제 6 조

쌍방은 국경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선과 호상 이해, 양보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잘 처리해야 한다.

1) 쌍방은 국경연선에서 월경자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돌려보내야 하며 돌아갈것을 거절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상대측에게 제때에 넘겨 주어야 한다.

월경할 때 그가 사용하였거나 휴대한 물품과 운수수단을 같이 넘겨 주어야 한다.

2) 쌍방은 국경연선에서 월경하여 진행하는 강탈, 절도, 랍치, 상대방의 공민을 해치거나 무기, 탄약, 마약 등 밀매와 밀수를 비롯한 사건들을 발견하면 제때에 현장에서 조사확인하며 각기 국내유관규정에 따라 처리방법을 협상한다.

3) 쌍방은 짐짐승이 넘어가거나 넘어오는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때에 호상 통보하고 인차 협조하여 찾아 넘겨주어야 하며 숨겨두거나 도살 또는 팔지 말아야 한다.

4) 쌍방은 국경연선에서 소속이 불명확한 시체와 물품을 발견하면 공동으로 처리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 제 7 조

두 나라 국가적명절에 즈음하여 쌍방국경지역대표부는 호상 초청 하여 공동으로 경축할수 있으며 쌍방국경경비부대의 문화, 체육교류와 호상참관 등 활동을 조직한다.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쌍방국경지역대표가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 8 조

쌍방은 협상을 통하여 의정서의 형식으로 이 합의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한 급에서 토론하고 회의 기록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 9 조

이 합의서는 수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유효기간은 5 년이며 만일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에 일방이 서면형식으로 다른 일방에게 이 합의를 끝낼 것을 제기하지 않으면 본 합의서는 5 년씩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본 합의서는 2004 년 6 월 28 일에 평양에서 수표되었으며 중국어와 조선어로 각각 2 부씩 작성된 두 원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 표 하 여

인민무력부를 대표하여



## 부 록

### 국경지역대표부의 임무와 사업방식

1. 쌍방은 국경지역에서 제기된 문제를 협상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경지역대표부를 설치한다.

#### 1) 중 국 측

① 단동 국경지역대표부의 관할지역은 압록강하구 강바다 분계선 표식으로부터 혼강구까지이다.

면담상봉장소는 단동시에, 상봉분소는 래평만에 설치한다.

② 통화 국경지역대표부의 관할지역은 혼강구로부터 2 도라자까지이다.

면담상봉장소는 집안시에, 상봉분소는 청석진에 설치한다.

③ 백산 국경지역대표부의 관할지역은 2 도라자부터 백두산천지 5 호경계표식까지이다.

면담상봉장소는 장백진에, 상봉분소는 립강시에 설치한다.

④ 연변 국경지역대표부의 관할지역은 백두산천지 5 호경계표식으로부터 중국, 조선, 러시아 3 국국경교차점까지이다.

면담상봉장소는 도문시에, 상봉분소는 삼합진, 남평진, 사라자진에 설치한다.

우에서 지정한 4 개 지역의 변강대표들은 분군구 사령원이며 부대표들은 각각 분군구 부사령원(참모장)과 변방부대 부대장이다.

## 2) 조 선 측

① 평안북도 국경지역대표부의 관할지역은 압록강하구 강바다 분계선표식으로부터 동주리와 부흥리의 경계선까지이다.

면담상봉장소는 신의주시에, 상봉분소는 삭주군 방산리에 설치한다.

② 자강도 국경지역대표부의 관할지역은 동주리와 부흥리의 경계선으로부터 장흥리와 갈전리의 경계선까지이다.

면담상봉장소는 만포시에, 상봉분소는 운봉구에 설치한다.

③ 량강도 국경지역대표부의 관할지역은 장흥리와 갈전리의 경계선으로부터 삼장리와 립강리의 경계선까지이다.

면담상봉장소는 혜산시에, 상봉분소는 증간군에 설치한다.

④ 함경북도 국경지역대표부의 관할지역은 삼장리와 립강리의 경계선으로부터 중국, 조선, 러시아 3국국경교차점까지이다.

면담상봉장소는 회령시에, 상봉분소는 무산군, 온성군 남양, 새별군에 설치한다.

우에서 서술한 4 개 지역의 국경대표는 국경경비려단 려단장이며 국경부대표는 국경경비려단 부려단장과 통행검사소(신의주, 운봉, 혜산, 회령) 소장들이다.

2. 쌍방 국경지역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호상통보하고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인원, 짐짐승, 운수수단 등의 비법월경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에 저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는것을 미리막고 제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3) 월경한 인원, 집짐승, 운수수단들을 상대측에 넘겨주고 넘겨받는 사업을 조직한다.

4) 쌍방국경부대의 문화, 체육교류와 호상참관 등 활동을 조직한다.

5) 이밖에 상급이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3. 국경지역 대표, 부대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경지역대표

① 관할지역에서 본 합의서를 집행한다.

② 자기측 국경지역대표부와 면담상봉장소, 상봉분소의 사업을 지도한다.

③ 관할지역안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하여 해결한다.

2) 국경지역부대표

대표의 사업을 협조하며 대표가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정한 부대표가 대표임무를 수행한다.

4. 쌍방 국경지역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연계를 가지고 사업한다.

① 국경지역대표, 부대표는 면담과 서신교환의 형식으로 사업한다.

면담은 일반적으로 초청측 경내에서 하며 초청측은 7 일전에 면담 날짜와 시간, 장소, 토의문제, 참가인원 등을 상대측에 통보해야 하며 초청받은 측은 3 일안에 답변을 주어야 한다.

면담결과는 필요에 따라 회담기록으로 남길수 있다.

② 면담상봉장소 소장, 부소장 그리고 국경지역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상봉을 할수 있다.

상봉은 일반적으로 낮에 진행하며 긴급한 정황이 발생되면 밤에도 할수 있다.

쌍방은 상봉을 요구하는 상대측의 신호를 받으면 즉시에 상봉장소에 나가야 한다.

③ 쌍방은 면담상봉장소와 상봉분소에 유선전화로 설치하거나 합의한 지점에 낮에는 기발을 올리며 밤에는 불빛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연계를 가지며 구체적인 문제는 쌍방 국경지역대표들이 협의하여 한다.

5. 쌍방은 국경지역대표부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장한다.

① 국경지역대표부 성원들이 면담, 상봉을 위하여 입출국할 때에는 편리를 보장한다.

② 국경지역대표부 성원들은 규정된 표식을 달아야 하며 쌍방이 협상한 증명서를 가지고 합의된 지점으로 입출국해야 한다.

③ 국경지역대표부 성원들이 상대측 지역에서 면담, 상봉을 진행하는 기간 그들의 생명안전과 휴대한 문건, 물품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④ 쌍방은 자기측 지역에서 진행하는 면담, 상봉 등 활동을 위하여 사업장소와 운수수단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사이 국경경비분야에서 협조 할데 대한 합의서》 수정보충에 관한 의정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아래부터는 《쌍방》이라고 함)는 조중국경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2009년 7월 17일 베이징 회담의 합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사이 국경경비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아래부터는 《합의서》라고 함)수정보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의정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인민군 국경경비총국과 중국인민해방군 선양군구의 지휘관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2년에 한번씩 상봉하여 국경경비 협조와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상봉은 두 나라 국경지역의 도(성)소재지 혹은 쌍방이 합의한 기타 장소에서 룬번제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련계는 두 나라 군대 외사부문을 통하여 진행한다.

조선인민군 국경경비총국 지휘관대리인(참모장 혹은 부총국장)과 중국인민해방군 랴오닝, 지린성군구지휘관은 필요에 따라 상봉하여 국경경비협조와 국경지역대표부가 제출한 중요문제들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상봉은 두 나라 국경도시 혹은 관할지역의 기타 도시에서 룬번제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련계는 두 나라 군대 외사

부문 혹은 국경지역대표부를 통하여 진행한다.

2. 소속변경과 사업상필요에 따라 조선측 국경통행검사소(신의주, 운봉, 혜산, 회령)소장들은 국경지역대표부 부대표와 면담상봉장소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국경지역대표부 부대표의 직무는 해당 경비려단 부려단장이, 상봉분소 소장은 해당 지역 경비대대 대대장들이 맡아한다.

3. 국경관할지역의 변화와 관련하여 조선측은 라선국경지역 대표부를 새로 설치하고 중국측 엔비엔국경지역대표부와 사업한다. 관할지역은 함경북도 경흥군 학성구와 라선시 하여평리사이의 경계선으로부터 조선, 중국, 로씨야 3 국 국경교차점까지이며 면담 상봉장소는 라선시에, 상봉분소는 원정리에 설치하고 중국측 투먼 면담상봉장소, 취엔허상봉분소를 통하여 련계한다.

함경북도국경지역대표부는 경흥군 학성구와 라선시 하여평리 사이의 경계선으로부터 조선, 중국, 로씨야 3 국 국경교차점까지의 국경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

4. 《경원군(새별군)-사튀즈》상봉분소를 없애고 《원정리-취엔허》에 새로운 상봉분소를 설치하며 새 상봉분소의 직책과 사업방식은 조선측 라선국경지역대표부와 중국측 엔비엔국경지역대표부사이에 협의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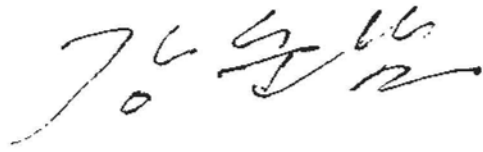
5. 쌍방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경지역대표부사이의 전화(확스)련락체제를 수립, 완비하며 2 주일에 1 차씩 시험통화를 하여 정상적인 련계를 유지한다.

6. 본 의정서는 《합의서》의 불가분리의 구성부분으로 되며 수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와 본 의정서에서 불일치한것

은 본 의정서를 기준으로 한다.

본 의정서는 2011년 11월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수표하였으며 조선어와 중국어로 각각 2 부씩 작성된 두 원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대표하여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를  
대표하여

